

제278회 임시회
2009.3.27(금)

심 사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27(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민경환 의원 외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3월 17일
- 회부일자 : 2009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3.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방법, 등록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장·군수의 의무와 공고사항 명시(안 제4조)
- 보호조치의 위탁과 위탁보호시설 해지요건 명시(안 제5조)
-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근거 명시(안 제6조)
-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준과 감면사항 등 명시(안 제7조, 안 제 8조)
- 권한의 위임사항과 과태료 내용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가구당 경제력 향상과 핵가족화의 급증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유기동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과태료 징수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월령 3개월 이상으로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위탁보호시설”이란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삽입하거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2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등록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등록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못 쓰게 되어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관할하는 지역의 등록대상 동물 수, 행·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물등록의 세부시행 방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및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안전하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및 사진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등으로 확인되면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의 위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별표 3의 기준을 갖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 ② 위탁보호자는 매 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위탁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보호동물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의견청취(진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③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25퍼센트를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등을 위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10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거나 위탁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량(1마리)
개	10kg이하	전용사료 3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300g
	10kg초과	전용사료 6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300g

비고 ①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와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시장·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군수와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과 요금을 적용한다.

7. 기타비용

가.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2]

수수료 징수기준(제7조, 제8조 관련)

1. 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변경) 또는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1. 마이크로칩 시술(장착)할 경우	19,000원
2.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
3. 등록증 재발급	5,000원

2. 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1. 신규 등록	10,000원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5,000원
3. 등록증 재발급	5,000원

[별표 3]

보호시설의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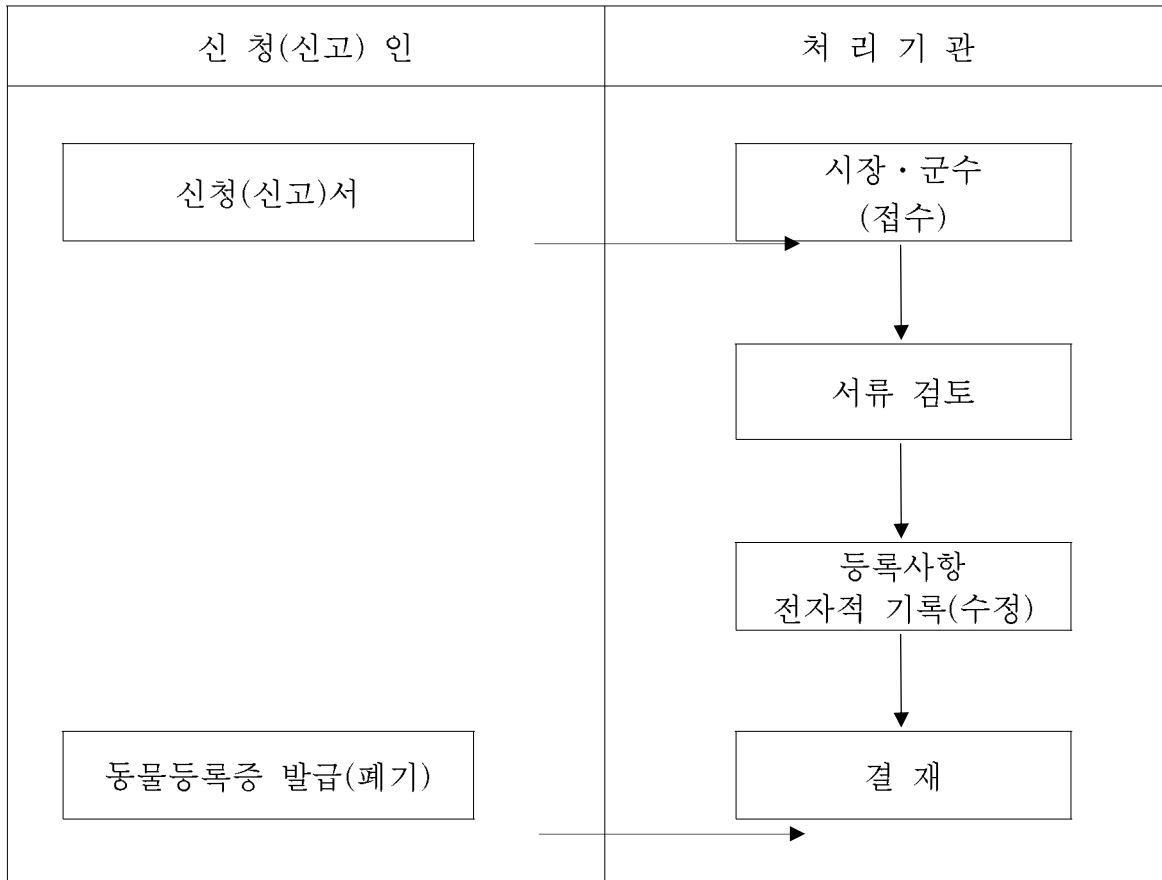
동물등록(신규·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② 동 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③ 변경 사항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등록동물의 분실 <input type="checkbox"/> 등록동물의 폐사			변경 사유 발생 일			등록동물 분실·폐사 원인			
				등록동물 분실·폐사 발생장소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신고안내 1. ②동물의 동물등록번호란과 ③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에만 적습니다. 2.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구 비 서 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수수료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사진(3cm×4cm) 1장(신규등록, 소유자 변경신고 시)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5.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규등록, 소유자·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변경신고 안내

(뒤 쪽)

1.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 소유자
 - 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3.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 한 후 동물등록증을 반환합니다.
4.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동물등록증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동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동 물 등 록 증						
동물등록번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p>등록동물 사진</p> <p>(3cm×4cm)</p> </div>				
소유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동 물	이 름	성 별	중성화 ○ / ×			
	품 종	털색갈	생년월			
<p>「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시장·군수 <input type="text"/></p>						

100mm×60mm[보존용지1 종 120g/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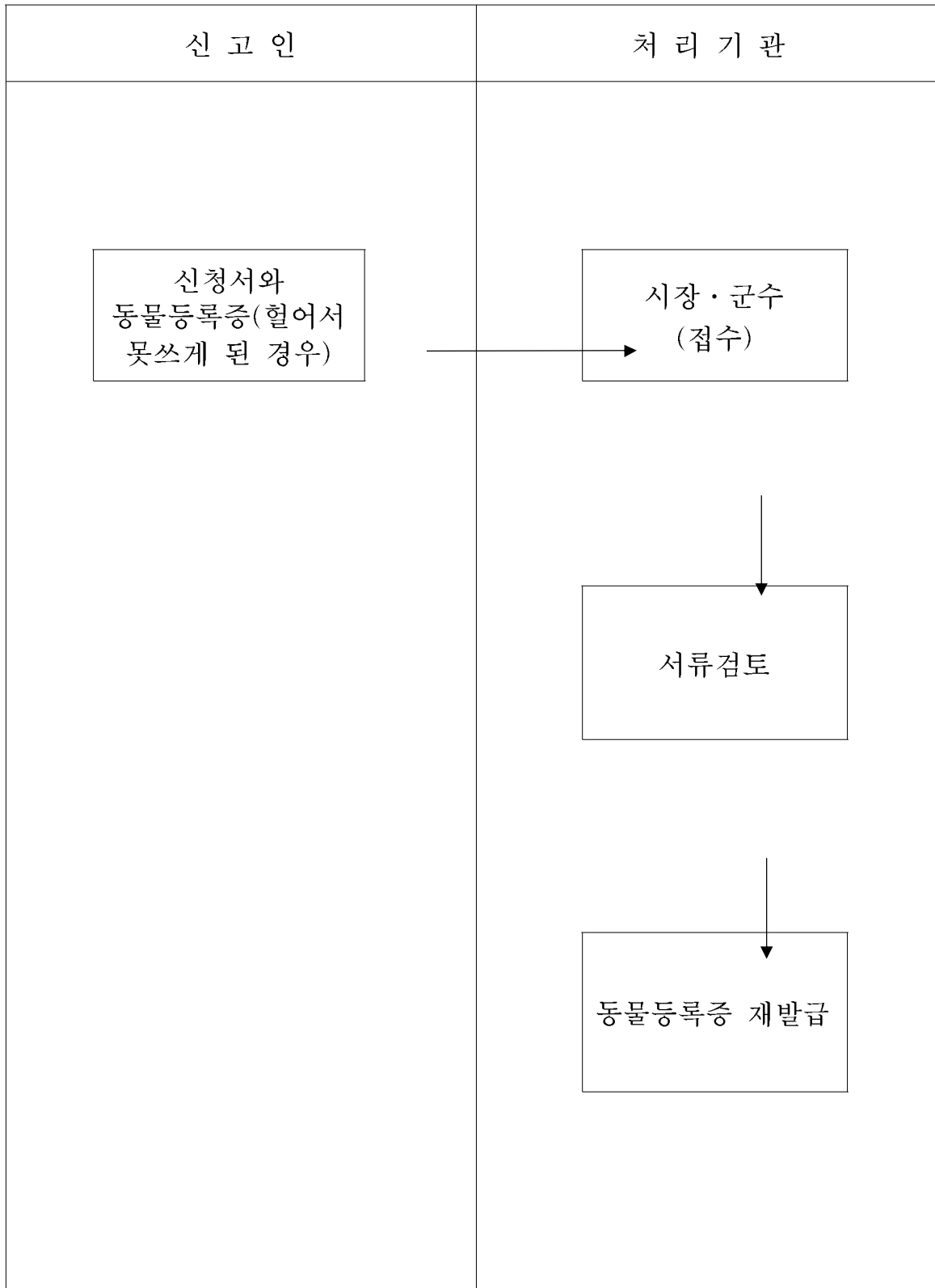
(뒤 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등록관청: 주소와 전화번호		

비고: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

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 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과태료)

⑦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 (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 수의사법

제17조 (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삭제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건(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건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건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